

농작물·다년생식물 재배지 이용사실 확인서

(공부상 지목이 전·답·과수원·임야가 아닌 토지)

신청인	성명(법인명)	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	전화번호		
신청농지	농지 소재지			면적(m ²)	최근 3년간 재배작목		
	읍·면동	리·통	지번		년 월	년 월	년 월

위 토지에 대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구분	성명	생년월일	날짜	서명
농지소재지○○리(통)장		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		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○○지원장·사무소장 귀하

- * 이(통)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*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*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주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